

결 정

2018 - 307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월 10일자(캡처시각) 「'8만원 투자 280억 번' 23살男 방송 나간 후에...」 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7. 1. 10. 14:35>

『가상화폐 '메디토큰' 개발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개인의료정보 보호하러 만 들었죠“

입력 2018-01-09 20:48, 수정 2018-01-10 06:03

지면 지면정보 2018-01-10A32면

“저는 재산의 90%를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보유 중입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국산 가상화폐 ‘메디토큰(MED)’을 발행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메디블록이 요즘 화제다. 메디토큰은 지난 주말 한 방송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백억원을 모은 자산가의 보유 종목으로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투자자가 몰리면서 시가총액도 급등했다. 6일 1200억원이던 시총은 9일 4815억원(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메디토큰 개당 가격은 80원에서 150원으로 뛰었다.

투기 우려와 함께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계획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33·사진)는 가상화폐의 성장가능성을 낙관했다. 한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많아 각종 데이터 연구실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공중보건의(군복무) 생활을 마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더리움을 알게 되면서 계획을 수정했다. 이더리움은 화폐로만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앱(응용프로그램)과도 연동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이 대표는 서울과학기술대 동기인 고우균 씨와 공동으로 지난해 4월 메디블록을 설립했다.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또 다른 가상화폐 퀴텀(QTUM)을 기반으로 메디토큰을 개발했고 같은 해 11월 가상화폐공개(ICO)를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거래소 코인레이에 상장했다.

메디토큰은 세계 최초로 의료정보에 특화된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거래내역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암호화돼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의료정보에 대한 주권을 병원이나 헬스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돌려주고자 메디토큰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과 스마트워치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헬스기기가 생성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병원이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만 열람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임의로 덮어쓰거나 위변조가 불가능해 보험사거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명확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을 옮기면서 블록체인으로 손쉽게 진료기록을 전달할 수도 있다”며 “각종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의료정보 등을 제약회사나 바이오기업 등에 판매할 때도 메디토큰을 화

폐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091095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산 가상화폐 ‘메디토큰(MED)’을 발행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메디블록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메디토큰은 세계 최초로 의료정보에 특화된 가상화폐이며,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가상화폐의 미래는 밝다고 밝혔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8만원 투자 280억번’ 23살男 방송 나간 후에…」로, 전체적인 내용을 대표하고 있지 않고 원래 제목과도 많이 다르다. 위 기사의 핵심 내용은 메디블록의 특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인데, 제목은 엉뚱하게도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한 23살男을 언급하고 있다.

‘8만원 투자해 280억 번 23세男’의 사연은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돼 대다수 언론이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나 위 기사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나 '그것이 알고싶다' 비트코인, 8만원 ...	매일신문	2018.01.08	네이버뉴스
나 '그것이 알고싶다' 비트코인, 23세 청 ...	세계일보	2018.01.08	네이버뉴스
나 [TV외강기] '그것이 알고싶다' 비트 ...	뉴스컬처	2018.01.08	
나 '그것이 알고 싶다' 비트코인 편...23 ...	중부일보	2018.01.08	

관련뉴스 5건 전체보기 >



'그것이알고싶다' 비트코인, 20대가 8만원으로 280억 원 방송에...근로의욕 저하...

중앙일보 2018.01.08.

23세의 이 청년은 가상화폐 시작 당시 8만원의 초기 자금을 투자해 280억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만 약 30억이 늘어났다면서 2000만원을 현금화 하는 모습을 제작진에게 확인시켰다. 복수의...



비트코인, 8만원→280억 고수익자 등장 '2000만원 현금화' 눈길

중앙일보 2018.01.07. 네이버뉴스

23세의 이 청년은 가상화폐 시작 당시 8만원의 초기 자금을 투자해 280억 원을 채굴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만 약 30억원이 늘어났다면서 2000만원을 현금화하는 모습을 제작진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위원	정 송 호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